

## 한강홍수통제소 공무직근로자(방호원)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근로계약 체결 안내

한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24-022호로 공고한 공무직근로자(방호원) 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 및 근로계약 체결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30일  
한강홍수통제소장

### 1. 최종합격자 명단

채용직종	응시번호 및 성명
방호원	05 구*남, 16 최*원

### 2. 채용후보자 등록

가. 등록대상 : 최종합격자

나. 등록일시 : 2024. 8. 2. (금) 14:00

다. 등록장소 :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

※ 한강홍수통제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(4호선 동작역 1번출구)

라. 등록방법 :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

마. 구비서류

① 기본증명서(상세) 1부.

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
③ 주민등록등본 1부.

④ 채용 신체검사서(붙임 1) 1부.

※ 채용 신체검사서는 검사에서 발급까지 1~2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은 후 제출(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)

⑤ 채용 포기서(붙임 2) 1부.

※ 면접합격자 중 채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“채용 포기서”를 작성하여 2024. 8. 1.(목)까지 전자우편(jslee13@korea.kr)으로 보내주시고,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. 근로계약 체결

가. 일시 : 2024. 8. 5.(월), 14:00 예정

나. 장소 :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

다. 준비물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중 택1), 도장, 통장 사본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02) 590-9914

[ 별지 제8호 서식 ]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경찰청(소속기관 포함)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원조사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6	고등학교졸업증명서
2	자동차등록원부(갑)	7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3	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		
4	병적증명서		
5	검정고시합격증명서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<붙임 1>

(앞쪽)

###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사 진 (3.5cm × 4.5cm) 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#### 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허리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 ) 우: ( 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 ) 우: ( )
종 양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 골 격 계 질 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 부 X선 검사	
기 타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 ]합 격 [ 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##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### [응시자]
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  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  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-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### [검진기관]

-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-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  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 -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- 나.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 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-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 -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
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     -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-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